

2020 고려대학교 바다 최고위과정

# 노동법의 일반이론 및 노동법정책의 방향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 최근 개정법령의 내용과 노동정책의 동향

# 근로기준법 관련 제도 변경

- 50인 미만 사업장 1주 52시간 상한 적용(2021.7.1)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2.31.까지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 가능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정안 시행
  - 특별한 사정의 구체화(1호 내지 5호 신설, **특히 4호, 5호 중요**),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소재·부품 및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 인정하는 경우
  - 인가기간 등 근거 마련(4호의 경우: 1회 최대 4주, 1년간 90일)
- 민간기업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화 시행(30인 이상 2021.1.1.)
  - 주휴일, 근로자의 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임기 만료에 따른 대선·총선·지선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2020.3.31 시행)**

선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

선원법 제5조 제1항: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를 적용한다

균등처우원칙, 폭행금지, 중간착취 배제, 공민권행사 보장, 취업방해 금지, 미성년자 임금청구, 임산부의 보호 및 관련 벌칙

## 선원법상 노동관련 규정

근로조건 명시

근로조건 위반

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강제저축 등의 금지

전차금 상계 금지

근로계약 해지 제한

해지의 예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의 존속

근로계약 종료의 특례

실업수당

송환 및 송환수당

임금관련 규정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유급휴가

선내급식과 안전 및 보건

소년 및 여성 선원

재해보상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취업규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법

- 가족돌봄 지원 확대(2020.1.1. 시행)
  - 돌봄 대상 가족 범위 확대: 종전,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에서 **자녀와 손자녀 추가**
  - 가족돌봄 휴가 신설(1년 10일 이내)
  - 가족돌봄 휴직: 1년 90일, 1회 30일 이상
  -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신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부부가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시 사용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 보호대상 확대
  -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배달종사자** 적용 대상 포함
- 대표이사의 책임 확대
  - 회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승인
- 건설공사 발주자 및 가맹사업본부의 산재예방조치 의무
- 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도급의 승인
  - 도급금지대상 명확화, 그밖에 유해 위험작업 도급승인제: 승인시 하도급 금지,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원청의 책임 강화
  -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등 정의
  -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 작업중지 제도 구체화
  - 사용자의 작업중지
  - 근로자의 작업중지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 안전의무와 책임 →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업무상 사고 재해자 '19년 94047명, 사망자 855명)+중대시민재해
  - 사업주: 자신의 사업 영위,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개인사업주)
  -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 및 책임을 가진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시행령), 재발방지조치, 시정명령 이행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 도급/용역/위탁관계: 제3자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방지 조치
- 재해발생시 처벌 등
  - 사업주/경영책임자: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상해, 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 확정 후 5년 이내 위반시 가중(1/2까지)
  - 양벌규정: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상해, 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책임)
  - 기타 제재: 안전보건교육 수강, 형 확정사실 통보,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시행일: 공포 후 1년, 50인 미만(50억원 미만) 공포 후 3년, 5인 미만 법 적용 제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

## 2021.7.6 시행

-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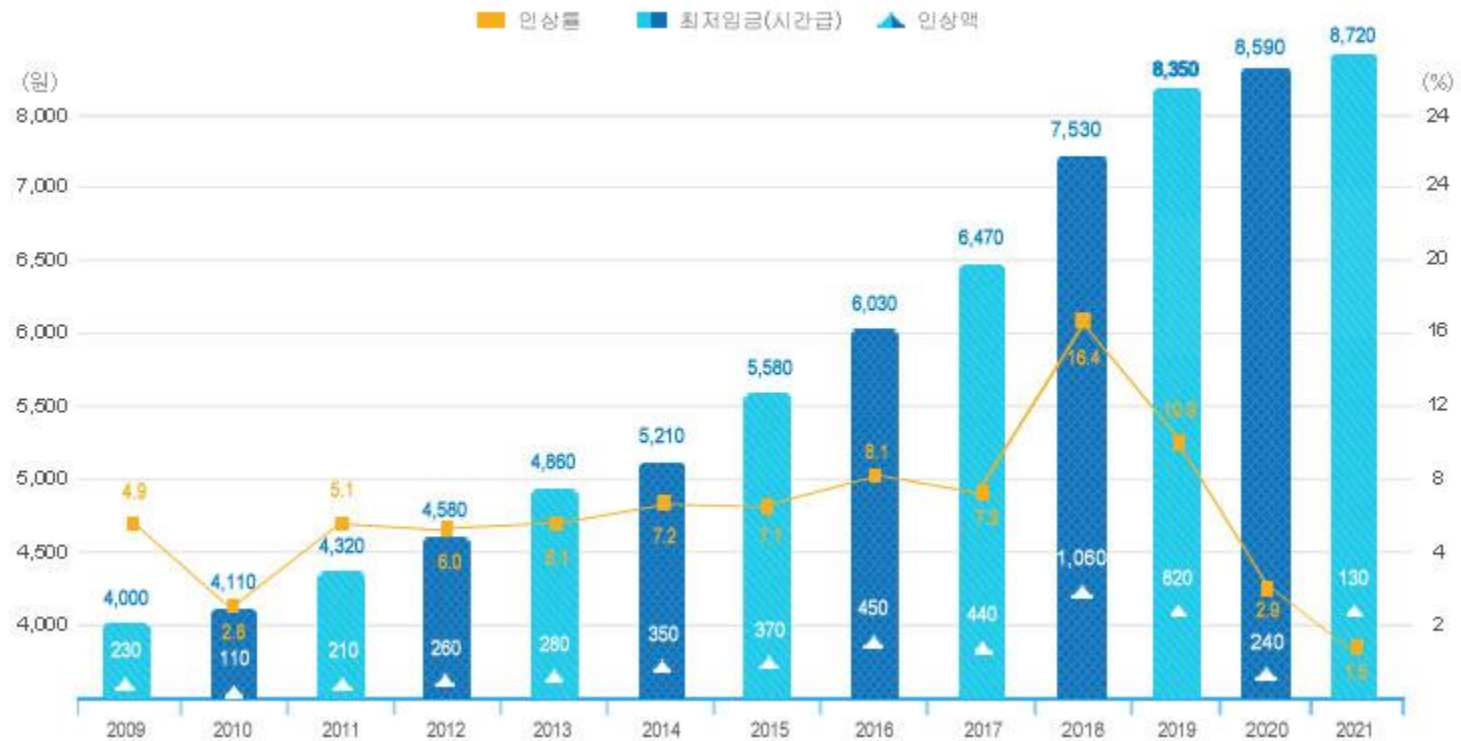
-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 확대(노조 결격사유 중 해고된 조합원의 근로자성 부인 규정 삭제)
- 비종사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내 조합활동 가능
- 비종사조합원은 기업별 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 자격 불인정, 교섭창구단일화 종사조합원 기준, 쟁의 행위 찬반투표 종사조합원 기준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쟁의행위 금지규정 삭제
-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부분은 무효: 무효의 의미
-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경사노위 산하 근무위에서 결정
- 분리된 교섭단위 통합 근거 규정 마련
- 개별교섭시 사용자의 차별대우 금지(중립의무)
- 다양한 교섭방식 선택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의무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 당면 노동정책 현안

- 2022년 최저임금액 결정
  -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7월 15일 이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 인상률?
  - 업종별 구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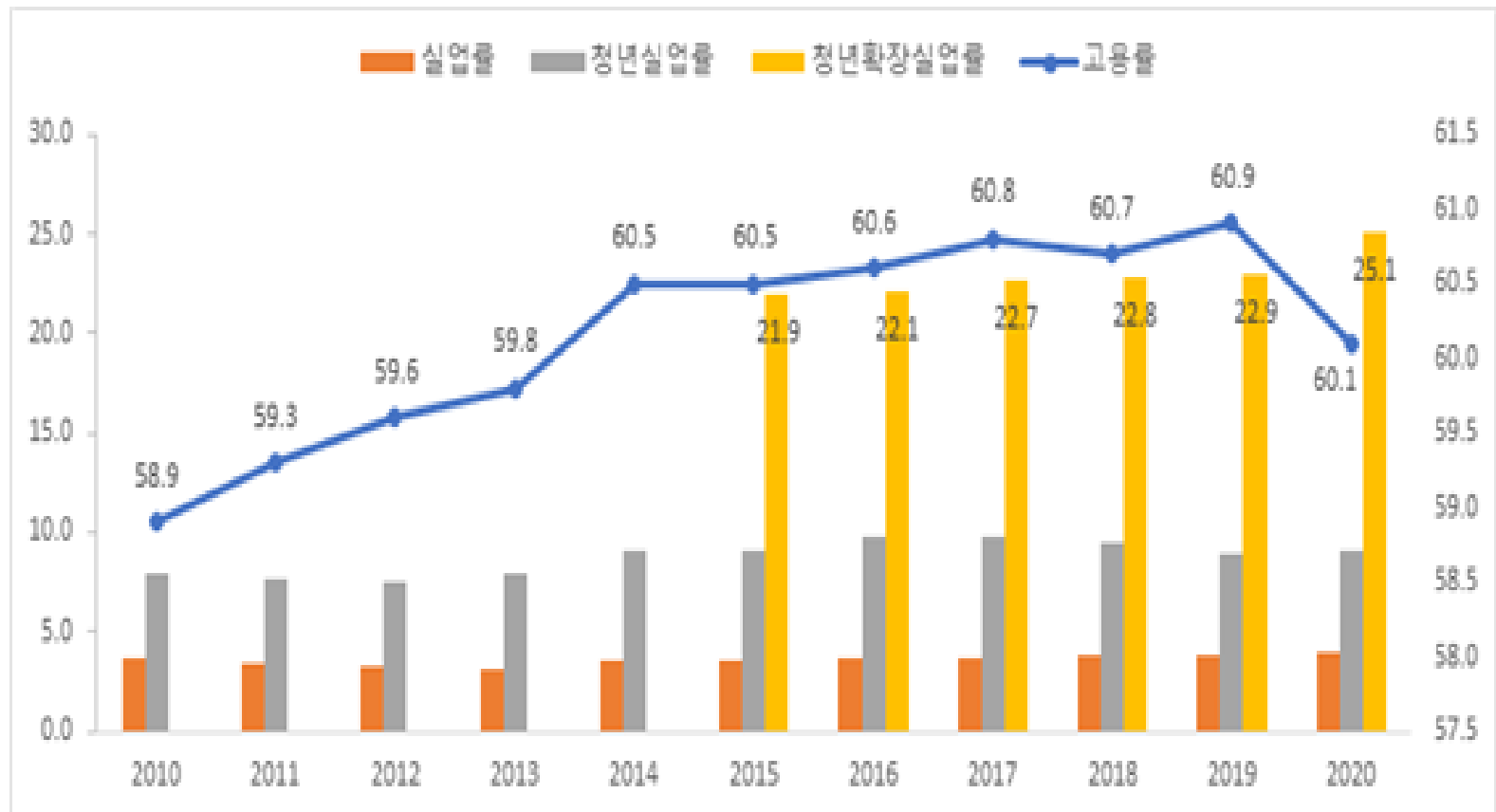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추이



#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실업부조제 도입

- 고용보험의 낮은 적용 문제 해결
  -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위기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일차적 타격 발생: 실업 및 소득 감소
  - 실업급여수급률이 고용안전망의 핵심척도인데 한국은 40% 수준으로 OECD 가입국들 평균인 60%의 2/3 수준
- 취약계층 적용 확대
  - 고용구조의 구조적 특성인 영세자영업의 높은 비율(약 25%), 높은 비정규직 비율(근로자의 34%), 160만에 이르는 특고, 영세소기업들의 높은 비중(378만 명 고용)
  - 2019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52.9%가 신규 취득자(과거 가입자 포함), 49.1%가 자격상실자로 노동시장의 높은 유동성 반영
  - 정부/여당은 소득파악과 보험료부과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계층과 집단부터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 추진
- 고용안전망 확대 방안과 실업부조(취업지원제도)
  - 고용보험의 확대 노력은 자영업자, 특고, 비정규직, 영세소기업의 높은 비중 때문에 한계
  - 고용보험체계에 포섭하기 어려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기금(별도 트랙) 마련 필요
- 코로나 위기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시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생계안정지원 제도 마련
  - 지원체계와 내용, 수준의 통일화, 체계화 필요

# 노동시장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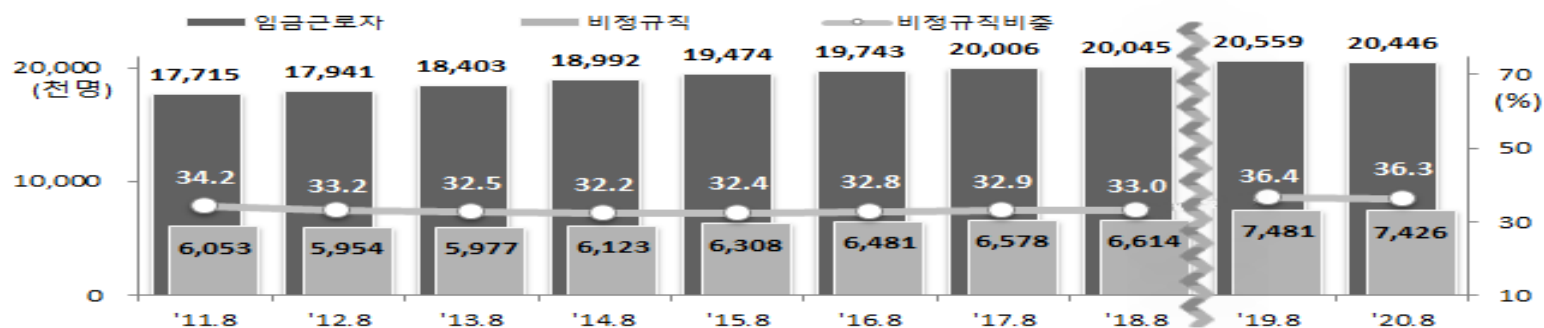


# 노동시장 현황과 문제점



# 노동시장 현황과 문제점

비정규직 규모(통계청)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고용노동부), 2021

|          | 대기업<br>정규직 | 대기업<br>비정규직 | 중소기업<br>정규직 | 중소기업<br>비정규직 |
|----------|------------|-------------|-------------|--------------|
| 근로자 비중   | 11.1%      | 2.1%        | 52.6%       | 34.3%        |
| 시간당 임금수준 | 100.0      | 64.5        | 57.0        | 42.7         |

# 노동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낙하하는 고용률, 줄어드는 일자리
- 심화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소득 양극화
- 비정규직 확대, 근로조건 격차

→ 해법은?

감사합니다